

MSDS 업데이트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장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글 편집실

Q 현직 보건관리자입니다. MSDS 변경 정보를 각 업체에 요청해 받기에 품목이 너무 많고, 일일이 묻기에도 번거로운데요. MSDS를 최신 개정본으로 업데이트하여 관리하는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A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상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한 자료를 말하며, 물질 안전보건자료로 해석됩니다.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MSDS 작성·제공해야 하며, 화학물질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MSDS를 게시·비치해야 합니다. 질문처럼 MSDS의 내용은 여러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라, 새로운 독성 발견 등으로 인해 수시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뿐 아니라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새로이 추가되거나, 폐지되는 규제 사항도 더러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개정 주기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159조 제1항에서는 변경(개정)이 필요한 항목을 정하고 있으며, 제1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이 반영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즉시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그 누구나 MSDS 검색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안전보건공단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또 자체적으로 1년 정도의 주기를 설정해 MSDS를 갱신하려는 노력도 중요할 것입니다. MSDS 관련 사회적 이슈나 공인 자료에 민감히 반응하는 것도 보건관리자의 막중한 역할일 것입니다.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정보검색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제품명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전부 포함된 경우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국외에서 제조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자”라 한다)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경우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 방법·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

① 법 제110조 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품명(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41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제품명의 변경 없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3.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산업보건관리자 여러분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과 궁금증을 보내주시면 관련 전문가가 자세히 답변해드립니다.

58P <독자의 소리>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세요.